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9. 25.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접수일자 : 2008년 9월 11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9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 9. 23)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철)

가. 제안이유

- 주민 정보화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생들의 자증심 고취를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강료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36조의 2)

교육시간	수강료
10시간 ~ 20시간	10,000 이하
21시간 ~ 30시간	20,000 이하
31시간 ~ 50시간	30,000 이하

- 장애인, 기초수급자, 모·부자 복지시설 수용자·이용자, 60세 이상의 노령자, 국가유공자는 면제
-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개강전까지 수강 포기시에는 전액 반환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고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강료의 징수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수강료 징수기준은 도봉구, 강남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고, 또한 저소득 주민, 장애인, 60세이상 노령자 등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으나,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현황을 보면 유료가 5개 구청, 무료가 19개 구청인 것으로 꼭 수강료를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1 호
----------	---------

제출연월일 : 2008.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구민 정보화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생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구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강료 징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36조의 2)

교육시간	수강료
10시간~20시간	10,000 이하
21시간~30시간	20,000 이하
31시간~50시간	30,000 이하

- 장애인, 기초수급자, 모·부자 복지시설 수용자·이용자, 60세이상의 노령자, 국가유공자는 면제
-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개강전까지 수강포기시에는 전액 반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08. 5. 13 ~ 6. 2)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8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징수 등) ①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만60세 이상의 노령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모·부자복지시설 등 여성관련 복지시설의 수용자 또는 이용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국가 유공자

④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개강일 전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의 수강료 징수 기준(제36조의2 관련)

교육시간	수강료	비고
10시간~20시간	10,000 이하	
21시간~30시간	20,000 이하	
31시간~50시간	30,000 이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정보화촉진기본법</u>, <u>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u> 및 <u>지방자치법에</u>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1조(정보화자료 수수료) ①정보화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u>지방자치법 제128조</u>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자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 명>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정보화촉진기본법</u>,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u>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u> 및 <u>지방자치법</u>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1조(정보화자료 수수료) ①정보화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u>지방자치법 제128조</u>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자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36조의2(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징수 등)</u></p> <p>①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p> <p>3. 만60세 이상의 노령자</p>

현행	개정안
	<p>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모·부자복지시설 등 여성관련 복지시설의 수용자 또는 이용자</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국가 유공자</p> <p>④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개강일 전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p>